

본 계약 조건은 판매자 (판매자)와 프록터앤드갬블사 (구매자) (각각은 "당 당사"; 함께 묶여서는 "당 당사자들")간의, 제품/서비스 (각각은 "제품" "서비스", 함께 묶여서는 "제품/서비스")에 관한 구매 발주, 양도 혹은 그의 발주 처분 (합의)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1. **자체 제품 또는 장비 처분.** 판매자가 구매자의 제품 또는 구매자의 지적재산권을 형성하는 것과 연계된 품목 ("처분 품목")을 처분할 경우, 판매자는 처분 품목이 구매 불가한 것이 확실한지 봐야 하며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부계약에 해서는 안된다. 판매자는 판매자의 성과와 관련된 구매자의 제품에 대한 위법 또는 구매자의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타당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2. **제품의 반환.** 어떤 제품이나 그 부품이 본 계약 조건들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다음과 같이 할 자격을 갖는다: (i) 판매자의 비용으로, 그러한 제품 또는 그 부품을 폐기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구매자의 재량에 따라, 총 가격 및 모든 비용을 환불 또는 크레딧(공제) 받는다. 또는 (ii) 판매자의 비용을 들여 해당 제품을 재작업한다.

3. **본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 서비스가 본 계약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지불할 금액 전체 혹은 일부를 크레딧(공제) 받거나 지불을 유보할 수 있고,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계약에 따른 판매자의 의무 사항들을 제 3자를 고용해 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4. **구매자에 의한 편의적 계약 해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오 (5)일 이내에 서면 통보를 한 후, 편의에 의한 본 계약의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때 어떠한 벌금이나 책임 또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5. **지급 기한.** 지급 기한은 구매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납품할 송장을 받은 날짜, 또는 구매자의 최종 목적지까지 제품을 받은 날짜, 혹은 해당 서비스 이행 날짜, 혹은 구매자가 지급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얻은 날짜(필요한 경우) 중에서 가장 늦은 날짜로부터 산출된다. 구매자의 송장이 부정확하거나 구매자의 송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판매자의 송장이 법적 또는 세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구매자의 송장 요건은 <http://www.pgssupplier.com/invoicing-information>에 기재되어 있다. 제품은 INCOTERMS® 2010에 따라 선적되는 것으로 한다.

6. **제품/서비스에 관한 보증.** 판매자는 타이틀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그리고 제품의 유통 기한 동안, 제품 및 그 모든 부분 (품목, 화학성은 혹은 그의 부품이나 구성성분) (i) 계약서에 첨부 혹은 참조로 포함된 사양서 ("사양서")에 완전히 부합하며; (ii) 안전하며 구매자의 의도된 사용에 적합하며; (iii) 판매가 가능한 품질을 갖고 있으며 잠재적인 혹은 특이적 결함을 갖고 있지 않으며; (iv) 모든 적용 가능한 법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한다. 판매자는 서비스의 이행 시점 및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서비스들이 (i) 사양서를 완전히 충족하며; (ii) 만족할만한 정도의 속도의 수준으로 이행되고, 자재나 손실에 있어 잠재적인 혹은 특이적 결함이 없고; (iii) 이와 같은 종류와 범위의 사업에 있어 서비스 산업의 일부 벤더들이 채택하는 주의 기준들에 부합하며; (iv) 모든 적용 가능한 법을 완전히 준수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한다. 구매자가 계약의 위반이 발생한지 4년 이후 혹은 그러한 위반이 발생하지 5년 이내에 구매자가 그것을 발견한지 1년 이내 중에서 더 늦은 기간 이내에까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그러한 위반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구매자는 섹션 7의 위반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7. **타이틀과 리엔.** 신실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때, 판매자는 어떠한 리엔, 청구권, 선취특권, 담보물, 지당물, 모기지, 신실 증서, 유선, 또는 기타 어떠한 종류의 채무 (의문)도 없는 상태의 제품 및 제품에 대한 마케팅 권한을 구매자에게 이전한다. 판매자는 판매자의 소유 또는 통제에서, 유선, 또는 기타 어떠한 종류의 자산이 어떠한 리엔, 청구권, 선취특권, 담보물, 지당물, 모기지, 신실 증서, 유선, 또는 기타 어떠한 종류의 채무도 없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구매자의 자산을 명시해야 한다.

8. **지적재산권.** 판매자는 제품/서비스 및 어떤 결과 제품이라도 제 3 자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혹은 등록물, 기업 비밀, 기밀 정보, 또는 그와 유사한 지적재산권 (모두 묶여 "지적재산권")을 침해, 위반, 도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으로 한다. 판매자는 제품/서비스가 어떤 결과 제품이라도 제 2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 위반, 도용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해결되거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청구 사항이나 소송이 현 시점에서 없다는 점을 보증하는 것으로 한다. 판매자는 그러한 청구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 구매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9. **아동 노동, 강제 노동 및 저속가능한 가이더라인.** 판매자는 아동, 죄수 노동, 영기계약 노동, 담보 노동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체벌 또는 기타 규율 형태의 정신적 및 신체적 강제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국가법이나 지역 법에 해당 규규가 없는 경우, 15세 미만인 자는 아동으로 간주한다. 만약 지역 법에서 최소 연령을 15세 미만으로 규정하지만, 국제노동기구관례 138의 예외 규정에 부합할 경우, 더 낮은 연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판매자는 www.pgssupplier.com에 기재된 P&G의 공급자 관계에 대한 지침 가능한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한다.

10. **법 준수.** 판매자는 외국법판례법과 같은 반부패 및 반부패 법을 포함하나 거기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적용 가능한 반부패 및 반부패 법령부의 요건, 법적 요건, 규제적 및 직업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본 계약에 따른 판매자의 업무가 미국령에 위치할 경우, 판매자는 29 CFR Part 471, Appendix A to Subpart A 및 41 CFR § 60-1.4 (a)-(1)-(7), 41 CFR § 60-741.5(a), and 41 CFR § 60-250.5. 를 포함한 모든 적용 가능한 평등 기회법에 명시된 고용인 통보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1. **사생활.** 판매자는 본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의 일부이기도 한 www.pgssupplier.com에 명시된 구매자의 사생활 정책 및 보안 요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12. **판매자 다양성 프로그램.** 판매자의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생산, 판매, 행정)가 미국에 위치하거나 미국에 제품/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에게는,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선에서, 구매자의 소수주대 및 여성 소유의 비즈니스 개발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개발할 의무가 기대된다.

13. **판매자의 구매자 배상 및 제 3자에 대한 청구에 대한 배상 절차.** 판매자는 다음으로부터 비롯되거나 관련된 제 3자의 청구권, 손실, 비용, 손해 또는 비용, 벌금, 합의금, 타당한 법률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한 청구에 대해, 판매자, 판매자의 모회사, 자회사, 관계사, 직원, 이사진, 직원 (P&G 그룹)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i) 판매자에 의한 본 계약의 위반; (ii)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하청업자 또는 각각의 직원 또는 그 대리인들이 범한 과실, 중과실, 불성실, 의도적인 위법행위, 또는 (iii) 본 계약으로부터 비롯되거나, 본 계약에 따른 판매자의 행동에 따른 개인 자산에 대한 신체적 부상, 사망 또는 손해. 제 3자가 P&G 그룹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들어갔다는 통보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그리고 그에 대해 P&G 그룹이 섹션 14에 따라 배상을 구할 때), P&G 그룹은 판매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판매자는 제때에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 사실상의 편견을 받게 된 범위내에서 배상 책임을 면제받는다.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구매자가 배상할만한 타당한 명망 있는 변호인을 구해 그러한 제 3자에 의한 법적 절차에 대응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판매자는 구매자의 서면 동의서가 있는 경우, 그러한 제 3자에 의한 법적 절차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며, 이러한 권한은 보류되거나 연기되서는 안된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기와 같은 법적 조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구매자를 도와야 한다. 이때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판매자는 P&G 그룹에 청구된 모든 손해 비용을 지불한다.

14. **지적재산의 침해 배상 및 제 3자 지적재산권 청구권에 대한 배상 절차.**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제품/서비스로부터 발생하거나 관계된, 또는 제 3자를 침해, 위반, 도용한다고 주장되는 모든 청구들로부터 P&G 그룹을 옹호하고 배상을 약속해야 한다.

어떤 제품/서비스 혹은 그 일부가 지적재산권 침해, 위반, 또는 도용의 대상이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다음의 우선 순서대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제품/서비스 또는 그 일부의 사용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권리 확보, 또는 (b) 그러한 제품/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교체 또는 수정하는 것이 제품/서비스의 성능이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것을 교체 또는 수정해서 비침해적인 것으로 만든다.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제품/서비스로부터 발생하거나 관계된, 또는 제 3자의 구매자로부터 제공된 사양서로부터 또는 그와 관계된, 그리고 그러한 사양서 없는 그러한 침해가 판매자에 의해 옹호되어 제공되지 않은 지적재산권을 침해, 위반, 도용한다고 주장되는 모든 청구들로부터 P&G 그룹을 옹호하고 배상을 약속해야 한다. 본 섹션 15에 따라 배상을 구하는 자 ("부상 받은 자")는 제 3자에 의한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통보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상대방 ("위반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반한 자가 제때에 통보를 받지 못함으로써 인해 실제적인 편견을 받은 범위내에서 위반한 자는 그 배상 의무가 면제된다. 구매자를 입은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반한 자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부상을 입은 자가 수용할만한 타당한 명망 있는 변호인을 구해 그러한 제 3자에 의한 법적 조치에 대응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위반한 자는 부상을 입은 자의 서면 동의서가 있는 경우, 그러한 제 3자에 의한 법적 절차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며, 이러한 권한은 보류되거나 연기되서는 안된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기와 같은 법적 조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자를 도와야 한다. 이때 비용은 위반한 자가 부담한다. 위반한 자는 부상을 입은 자에게 청구된 모든 손해 비용을 지불한다.

15. **지적재산권의 소유권.** 판매자는 효력일 이전에 판매자가 소유한 모든 창조적인 아이디어, 개발물,

발명품, 저작물, 노하우, 업무 결과 ("창조물")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하며, 판매자는 본 서비스의 직접적 결과로 생성되지 않은 범위내의 모든 창조물 및 지적재산권을 소유한다 ("판매자의 지적재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지적재산에 대한 비독점적인, 로열티가 따르지 않는, 전세계적인, 영속적인, 변경불가의, 이전 가능한, 서브 라이선스가 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함으로써, 본 서비스 및 그로 인한 모든 결과 제품의 혜택을 완전히 받기 위해 혹은 판매자의 지적재산을 복사, 유지, 지원, 수정, 개선 및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요청한 모든 타당한 형태로 된 판매자의 지적재산의 물리적 구현물을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구매자는 효력일 전에 구매자가 소유한 창조물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자이며, 구매자는 본 서비스의 직접적인 결과로 생성된 범위내에서 판매자가 생성하거나 판매자를 대신해 생성된 모든 창조물과 지적재산권 (구매자의 지적재산)에 대한 소유권자이다.

구매자에 의해 생성된 구매자의 지적재산은 저작권법에 따라 입수 가능한 범위내에서 임대를 위한 업무로 간주된다. 임대를 위한 업무로 간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판매자는 로열티 없는, 전세계적인, 영속적인, 변경불가의 구매자의 모든 지적 재산권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구매자에게 이전한다. 그러한 이전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판매자는 구매자의 지적 재산에 대한 독점적인, 로열티가 없는, 전세계적인, 영속적인, 변경 불가의, 이전 가능한, 서브 라이선스가 가능한, 그리고 제한되지 않는 라이선스를,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판매자가 구매자의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문서화 혹은 구매자의 지적 재산에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을 확보 또는 완전하게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모든 서류에 이서를 해야 한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본 서비스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구매자의 지적 재산에 대한 무효화가 가능한, 비독점적인, 로열티가 없는, 전세계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판매자는 그 직원들이나 하청업자들의 직원들로 하여금 판매자에 의해 생성된 구매자의 모든 지적 재산을 판매자에게 이전하고 본 섹션 15에 명시된 판매자의 의무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까지, 판매자는 저자로 명시될 권리, 수정할 권리, 훼손을 방지할 권리, 그리고 상업적 옹호를 포함하나 거기에 한정되지 않는, 구매자의 지적 재산에 대한 모든 도덕적인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구매자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매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판매자를 대신해, 구매자의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도덕적인 권리들을 행사할 변경 불가한 권리를 갖는다.

16. **보험 요건.**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응인되는 보험사에 충분한고 관례적인 보험을 가입하며, 하청업자들에게도 가입하도록 (그들 비용으로) 한다. 상기 보험에는 본 계약에 따른 판매자의 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보험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P&G 그룹을 포함해야 하며, 이 사항은 보험 증권에 명시되어야 한다. 판매자는 P&G 그룹에 대한 청구에 대한 대리권을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변경 불가적으로 포기하는 바이며, 그 보험사들에게도 그러한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변경 불가적으로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17. **기밀 유지.** 판매자, 그 하청업자, 그리고 각각의 직원들은 기술적 혹은 비즈니스 정보를 포함하나 거기에 한정되지 않는, P&G 그룹의 특정한 상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모든 정보는 언제나 P&G 그룹의 단독 재산으로 남는다. 판매자와 그 하청업체들은 자신들의 직원들로 하여금 (a) 자신의 기밀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들이는 똑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상사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b) 정보를 분석하거나, 역설계를 위해 해제해버거나, 정보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되며, (c) 본 계약에 따른 판매자의 업무를 위해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판매자는 본 계약에 따른 판매자의 업무를 위해 알아야 하는 직원들에게만 정보의 공개를 제한해야 한다.

예 단란의 사항들은 (a) P&G 그룹에 의한 구매자의 시점에 이미 합법적으로 판매자의 소유였던 정보, (b) 판매자의 것이 아니라고 대응에 공개된 것, (c) P&G 그룹이 제 3자에게 제공한 것이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밀이 아닌 것, 혹은 (d) 판매자가 P&G 그룹에 대한 기밀 유지 의무가 없는 제 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하는 정보에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어떤 정보든지 공시할 법적 의무가 생기게 되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즉시 사전 서면 통보를 해야 한다. 구매자는 그러한 공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판매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만 공시해야 하며, 정보가 기밀로 다루어질 것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본 계약의 조항이 해지 혹은 만료 시 즉시 모든 정보를 반환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구매자는 본 섹션 17의 어떠한 위반 혹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담보물을 맡기거나 실제 손해를 증명할 필요 없이 특정 수정 및 공급명령구제를 구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섹션 17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들은 본 계약의 해지 혹은 만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만약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해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판매자는 참고용으로 본 계약서에 포함된 www.pgssupplier.com에 게시된 구매자의 경쟁사 정보 수집 정책(Competitive Information Collection Policy)을 준수해야 한다.

18. **양도.** 판매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계약에서의 자신의 권리나 의무의 전체 혹은 일부라도, 대리시키거나, 하청을 맡기거나, 양도할 수 없다. 판매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UN, EU 또는 미국에 의해 지정 목록(designated list)(OFAC의 SDN 목록과 BIS 목록을 포함) 및 기타 다른 방법에 따라 국제적 제재를 받은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의무를 대리시키거나 하청, 이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단, 구매자는 판매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도, 본 계약에서의 자신의 권리나 의무의 전체 혹은 일부를 대리시키거나, 하청을 주거나, 이전할 수 있다.

19. **독립 계약자 위위.** 양당사자들은 서로에 대해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본 계약의 어떠한 부분도, 양당사자들이 파트너, 합작 벤처, 신사, 또는 대리인의 관계로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 양당사자들 중 어느 측에도 상대방을 구속하는 권리나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 판매자는 혼란된 인력을 데리고 본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판매자는 판매자의 직원, 대리인, 하청업자, 또는 그들의 직원들을 선택, 채용, 관리, 해고, 감독 또는 지칭할 권리, 권한, 의무에 대한 어떠한 노동 관계도 판매자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것으로 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와의 고용관계를 주장하는 판매자의 직원, 대리인, 하청업자 또는 그들의 직원들에 대한 모든 청구에 대해 구매자에게 배상하고 구매자를 변호해야 한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제 3자와 약속한 구매자의 합의 조건과 결과로 커미션이나 리베이트를 벌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공시.** 법적으로 요구되거나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자는 (i) 누구에게도 본 계약의 존재나 그 계약 조건들 혹은 양당사자들간의 관계의 유무에 대해 발표해서는 안되며, (ii) 구매자, 구매자의 모회사, 계열사 혹은 자회사의 기업명이나 상표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21. **수정 및 포기.** 본 계약의 보정, 수정, 포기 또는 해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행위가 대상으로 하는 상대방의 권한 있는 자의 서명이 있고, 본 섹션을 명시할 때만 가능하다. 어떠한 위반을 포기 혹은 본 계약의 이행에 실패하더라도 본 계약의 조건을 이행할 당사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외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에 대한 수정, 보정, 포기도 무효하다.

22. **준거법 및 해석.** 본 계약은 구매자가 위치한 카운티, 주 또는 지방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 부합되게 해석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국제사법 원칙들에 대한 참조 없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계약에 적용가능하고 지역 내에서 성과를 내는 것으로서, 국제 제품판매에 대한 UN 협약은 본 계약에 따른 거래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본 지역 관할 법원은 본 계약에 대한 모든 분쟁에 대한 독점 관할권을 갖는다.

23. **유효 조항.** 본 계약의 만료 혹은 해지 시에도, 만료나 해지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명시되었거나 혹은 필요에 의해 만료나 해지 이후에도 유효해야 하는 본 계약의 조항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4. **소송.** 판매자는 (i) 판매자의 일반 조항들을 포함하나 거기에 한정되지 않는, 일반 조항들에 우선하며, 판매자가 검토하고 승인한 것이며 (ii) 본 계약에 따라 송금을 내게 되면 판매자가 본 계약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계약은 본 제안의 조건에 관한 것으로 그 수용을 제한하는 바이며, 구매자는 본 구매 주문서에 대한 회신에 포함될 수 있는 이와는 다른 모든 혹은 추가적인 조건들을 반대하는 바이다.